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8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강동길, 김동욱, 김용호,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박철성, 봉양순, 성흠제,
이은림, 최민규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복합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과 복합재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장으로 하여금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토록 하고 대응 지침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재난 대응 훈련 등을 통해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과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25년 9월 1일로 함(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동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발 의 자 : 강동길, 김용호, 박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1. 제안이유

사회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복합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난과 복합재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시장으로 하여금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토록 하고 대응 지침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재난 대응 훈련 등을 통해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마.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과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 사.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25년 9월 1일로 함(안 부칙)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합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복합재난”이란 제1호의 재난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복합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이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관계) ① 복합재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② 복합재난을 구성하는 제2조제1호 각각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는 관련 법령(매뉴얼을 포함한다) 또는 조례를 따르며 이 조례는 이를 보완한다.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및 대응사례 분석
2.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3.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4. 복합재난 발생시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5. 중점관리 복합재난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합재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보고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 ① 시장은 복합재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복합재난 대응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
 2. 복합재난 발생 시 대응·복구 등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복합재난 안전관리의 실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재난에 대한 대응 및 훈련 등을 통해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다.

제7조(심의·자문) 시장은 제4조의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과 제5조의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제5조(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6조(복합재난 대응 지침의 작성·관리)는 기존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제7조(심의·자문)은 기존 1)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계획 소위원회'에서 운영되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대 상 : 위원 40명(당연직 6명, 임명직 14명, 위촉직 20명)
- 운영기간 : 2024. 1월 ~ 2024. 12월 (임기 2년)
- 사업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안전관리계획,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개정, 재난 등 발생시(발생우려시)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자문